
 농림축산검역본부		<h1>보도자료</h1>			
보도 일시	2022. 1. 12.(수) 10:00	배포 일시	2022.1. 12.(수) 09:30		
담당 부서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책임자	과 장	정승교 (054-912-0360)	
		담당자	사무관	백향일 (054-912-0380)	

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유통 투명성 높인다

- 1.10.부터 2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특별단속 -

주요 내용

- ◆ 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대 상)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 위생·통신판매영업장
 - (기 간) 2022.1.10. ~ 1.21.(2주간)
 - (인 원) 20개 단속반, 40명
 - (점검내용) 수입산 이력축산물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
 - (제재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조치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축산물위생영업장)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전문지보도자료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 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정승교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관련 영업장에서는 수입축산물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